## ※ 안전보건 협의체 조직표 및 운영계획

1) 협의체 구성조직표

| 의 장 | |
|---|---|
| 안전보건조정자 | 윤 병 률 |

| 원 도 급 위 원 | | |
|---|---|---|
| 소 속 | 직 책 | 성 명 |
| S F A | 안전보건총괄책임자 | 소 진 민 |
| | 안전관리자 | 이 구 영 |
| | 공사담당자 | 김 상 현 |
| | 물류담당자 | 류 영 훈 |
| | 전기담당자 | 김 현 기 |
| | 소방담당자 | 이 영 제 |

| 협 력 업 체 위 원 | | |
|---|---|---|
| 협력업체 | 공 종 | 성 명 |
| 창성건설 | 안전보건총괄책임자 | 이 성 근 |
| | 안전관리자 | 박 성 문 |
| | 공사담당자 | 류 호 관 |
| | 물류담당자 | 박 광 용 |
| | 전기담당자 | 박 지 상 |
| | 소방담당자 | 조 준 석 |

**2) 운영계획**

| | |
|---|---|
| 1. 대상 사업장 | 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 |
| 2. 운 영 | ① 매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 |
| 3. 협 의 내 용 | ① 작업의 시작시간, 작업장간의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위험시의 대피방법 등을 협의 |
| 4.안전보건 조정자 직무 |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을 파악<br>② 제1호게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<br>③ 제1호에 따른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·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<br>④ 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 |
| 5. 구 성 | ① 각 도급인의 사업주 전원 |
| 6. 토 의 사 항 | ① 작업의 시작 및 종료시간, ② 작업장간의 연락방법<br>③ 재해발생 위험의 대피방법 ④ 안전보건에 관한 운영<br>⑤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|

**[ 안전관리조직 변동사항 발생시 즉시 반영, 수정 예정임. ]**

# 안전보건조정자 지정서

소　　속 : ㈜한미글로벌건축사사무소

자　　격 : 건축법 제 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

성　　명 : 윤 병 률 단장

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, 제57조에 의거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합니다.

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7조)

①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의 파악

②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

③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의 시기·내용 및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

④각각의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 내용에 관한 정보 공유 여부의 확인

2022년 06월 16일

발주자 : 마스턴평택제78호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
법인이사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(인)